경력경쟁채용 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

①-1 건축분야 [소방사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부산
대구
울산
강원
충남
전북
경남
제주

❖ (자격증) 건축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자격증

기 술 사	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
기 능 장	건축목재시공, 건축일반시공
기 사	건축, 건축설비, 실내건축
산업기사	건축, 건축목공, 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 방수, 실내건축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 :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

- ◦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(별표1)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"2. 건축공사업" 또는 "3. 토목건축공사업"에서 근무한 경력
- ◦ 건축사법 제4조(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)에 의해 설립된 "건축사사무소"에서 근무한 경력
- ◦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(별표5)에서 전문분야 항목 "설계·사업관리"에서 "일반"과 설계등용역 중 "설계등용역일반"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
- ◦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*,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건축관련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채용 후 관련업무에 근무한 경력
- ◦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"건축분야" 중 조사인력(보조 포함)으로 근무한 경력

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※ 충남의 경우 건축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 관련부서에 근무

①-2 건축분야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중앙
경기

□ **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**

❖ (자격증) 건축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자격증

기 술 사	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
기 능 장	건축목재시공, 건축일반시공
기 사	건축, 건축설비, 실내건축
산업기사	건축, 건축목공, 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 방수, 실내건축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 :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

- ○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(별표1)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"2. 건축공사업" 또는 "3. 토목건축공사업"에서 근무한
- ○ 건축사법 제4조(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)에 의해 설립된 "건축사사무소"에서 근무한 경력
- ○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(별표5)에서 전문분야 항목 "설계·사업관리"에서 "일반"과 설계등용역 중 "설계등용역일반"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
- ○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*,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건축관련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채용 후 관련업무에 근무한 경력
- ○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"건축분야" 중 조사인력(보조 포함)으로 근무한 경력

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❖ (학력) 건축과·건축학과·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
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

※ 경기의 경우 건축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 관련부서에 근무

②-1 구급분야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중앙
서울
부산
대구
인천
광주
대전
울산
세종
경기
강원
충북
충남
전북
전남
경북
경남
제주
창원

❖ (자격증) 구급 관련 자격증(의사・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)을 취득한 후, 당해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

1)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·구조·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
2)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

○ 당해 기관 인정범위(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)

①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
↳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
② 「응급의료에관한 법률」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
③ 「응급의료에관한 법률」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한 경력
④ 「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
⑤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
⑥ 「학교보건법」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
⑦ 소방관련 교육기관(응급구조학과)에서 조교·교수로 근무한 경력
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· 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(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)로 근무한 경력
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(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)
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*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

* 기타 공공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②-2 구급분야(항공)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경남 제주	❖ (자격증) 구급 관련 자격증(의사・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)을 취득한 후, 당해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1)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·구조·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2)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○ 당해 기관 인정범위(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) ①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↳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 ② 「응급의료에관한 법률」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「응급의료에관한 법률」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한 경력 ④ 「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「학교보건법」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(응급구조학과)에서 조교·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· 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(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)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(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)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*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* 기타 공공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③ 구급상황관리분야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경기	❖ (공공경력) 국가기관・지방자치단체・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*에서 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 이상 그중 5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임용예정계급 :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(별표3)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④-1 구조분야 [소방사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	❖ (공공경력)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,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* 특수부대 근무경력 :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※ 미인정 기간 : 임관을 위한 교육기간 ○ 아래 ①②항의 특수부대 출신자는 - **경력증명서** 1부 (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)와 - **각 군별*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이 가능한 서류** 1부를 제출 * **육군** :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(발급처 : 육군본부 병적민원과) **해·공군** : '기타'란에 확인내용을 수기로 적시한 경력증명서 (발급처 : 해군본부 일자리정책과, 공군본부 전직지원정책과) **해병대** :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(발급처 : 해병대사령부 복지/전직지원처) ① (**육 군**) 육군특전사, 정보사, 강습대대, 신속대응사단, 군사경찰특수임무대(구.헌병특수임무대), 수색대대, 연대수색중대, 특공연대·대대, 특공여단, 기동대대, 연대기동중대, 기계화사단정찰대, 기계화사단정보대대예하지상정찰중대 (**공 군**) 공군공정통제사(CCT), 공군항공구조사, 군사경찰특수임무대(구.헌병특수임무대) (**해 군**) 해군정보부대(UDU), 군사경찰특수임무대(구.헌병특수임무대), 해군특수전전단(구.해군특수전여단(UDT)+구.해군해난구조대(SSU)) (**해병대**) 해병대 수색부대(구.해병특수수색대), 해병대 유격대대, 해병대 기습대대, 해병대 공정대대, 해병대 지상정찰소대, 해병대 저격반, 해병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, (**국방부 직할**)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1·24특임대대 ② **(기타 특수전부대)**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

④-2 구조분야[수난] [소방사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울산 세종 강원	□ **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** ❖ (공공경력)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,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* 특수부대 근무경력 :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※ 미인정 기간 : 임관을 위한 교육기간 ○ 아래 ①②항의 특수부대 출신자는 - **경력증명서** 1부 (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)와 - **각 군별*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이 가능한 서류** 1부를 제출 * **육군** :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(발급처 : 육군본부 병적민원과) **해·공군** : '기타'란에 확인내용을 수기로 적시한 경력증명서 (발급처 : 해군본부 일자리정책과, 공군본부 전직지원정책과) **해병대** :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(발급처 : 해병대사령부 복지/전직지원처) ① 해군 특수전전단(구.해군특수전여단(UDT)+구.해군해난구조대(SSU)) ② 해군 정보부대(UDU) ③ 해병대 수색부대(구.해병특수수색대) ❖ (자격증) 잠수 관련 자격증*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(4대 보험적용 사업장 근무자) * 관련 자격증 : 잠수기능장, 잠수산업기사, 잠수기능사

④-3 구조분야(항공)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<table>
<tr>
<td>경남
제주</td>
<td>
❖ (공공경력)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,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
* 특수부대 근무경력 :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
※ 미인정 기간 : 임관을 위한 교육기간
○ 아래 ①②항의 특수부대 출신자는
- 경력증명서 1부 (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)와
- 각 군별*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를 제출
* 육군 :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(발급처 : 육군본부 병적민원과)
해·공군 : '기타'란에 확인내용을 수기로 적시한 경력증명서
(발급처 : 해군본부 일자리정책과, 공군본부 전직지원정책과)
해병대 :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(발급처 : 해병대사령부 복지/전직지원처)

① (육 군) 육군특전사, 정보사, 강습대대, 신속대응사단,
군사경찰특수임무대(구.헌병특수임무대), 수색대대, 연대수색중대,
특공연대·대대, 특공여단, 기동대대, 연대기동중대,
기계화사단정찰대, 기계화사단정보대대예하지상정찰중대

(공 군) 공군공정통제사(CCT), 공군항공구조사,
군사경찰특수임무대(구.헌병특수임무대)

(해 군) 해군정보부대(UDU), 군사경찰특수임무대(구.헌병특수임무대),
해군특수전전단(구.해군특수전여단(UDT)+구.해군해난구조대(SSU))

(해병대) 해병대 수색부대(구.해병특수수색대), 해병대 유격대대,
해병대 기습대대, 해병대 공정대대, 해병대 지상정찰소대,
해병대 저격반, 해병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,

(국방부 직할)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1·24특임대대

② (기타 특수전부대)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
</td>
</tr>
</table>

⑤ 기계분야 [소방사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충남

❖ (자격증) 기계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자격증

기 술 사	기계
기 능 장	기계가공
기 사	일반기계, 기계설계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

○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

○ 인정 실무경력
- 기계설비의 설계·공사·유지·운용·점검
- CAE(CAD 포함), 응용역학, 유체공학 관련 설계·제작·조립·설치·검사·보수·관리 등

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※ 충남의 경우 기계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 관련부서에 근무

⑥ 노무관리분야 [소방교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부산

❖ (공공경력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*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
※ 근무(연구)경력은 노무 관련 법령해석, 심판·조정·자문·상담·지도, 단체교섭, 진정·고발·소송 대응 등 관련 실무경력에 한함

※ 임용예정계급 :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(별표3)

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⑦ 법무분야 [소방경] / 시험절차[면접]

서울
충북
전북
전남

□ **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**

❖ (자격) 「사법시험법」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(사법연수원 수료자)

❖ (자격) 「변호사시험법」에 의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

⑧-1 소방분야 [소방사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세종

❖ (자격증) 소방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자격증

기 술 사	소방
관 리 사	소방시설
기 사	소방설비(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)
산업기사	소방설비(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)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 :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

- ◦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- ◦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(별표1) 1.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- ◦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(별표1) 2.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- ◦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(별표1) 3. 소방시설감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- ◦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"소방분야" 중 조사인력(보조 포함)으로 근무한 경력

⑧-2 소방분야 [소방사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경기

□ **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**

❖ (자격증) 소방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자격증

기 술 사	소방
관 리 사	소방시설
기 사	소방설비(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)
산업기사	소방설비(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)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 :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

- ◦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- ◦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(별표1) 1.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- ◦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(별표1) 2.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- ◦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(별표1) 3. 소방시설감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
- ◦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"소방분야" 중 조사인력(보조 포함)으로 근무한 경력

❖ (학력) 4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·소방안전공학과·소방방재학과·소방행정학과·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
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

※ 경기의 경우 소방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관련부서에 근무

⑧-3 소방분야[소방관련학과] [소방사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창원	□ **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** ❖ (학력)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·소방안전공학과·소방방재학과·소방행정학과·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학사(전문 포함)학위를 취득한 사람 ❖ (학력)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·소방안전공학과·소방방재학과·소방행정학과·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*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함【붙임 13】

⑧-4 소방분야 [소방장] / 시험절차[필기, 면접]

경기	□ **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** ❖ (자격증) 소방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자격증 기 술 사 | 소방 관 리 사 | 소방시설 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 :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 ◦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◦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(별표1) 1.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◦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(별표1) 2.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◦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(별표1) 3. 소방시설감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◦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"소방분야" 중 조사인력(보조 포함)으로 근무한 경력 ❖ (학력) 4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·소방안전공학과·소방방재학과·소방행정학과·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 *※ 경기의 경우 소방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관련부서에 근무*

⑨-1 소방정분야[기관사] [소방사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중앙 부산 충남 전북 전남 경남	❖ (자격증) 1~4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, 승무경력*이 2년 이상인 사람 *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(승무경력의 증명)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

⑨-2 소방정분야[항해사] [소방사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중앙 부산 전남 경남 창원	❖ (자격증) 1~4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, 승무경력*이 2년 이상인 사람 *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(승무경력의 증명)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

⑩-1 심리상담분야 [소방사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부산 울산 경기 강원 경북	❖ (공공경력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*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※ 근무(연구)경력은 심리상담 연구·조사·분석, 심리치료상담, 심리재활, 심리자문 실무경력에 한함 ※ 임용예정계급 :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(별표3)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⑩-2 정신건강분야 [소방교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세종	❖ (공공경력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*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※ 근무(연구)경력은 정신건강 치료・간호・임상심리 실무경력에 한함 ※ 임용예정계급 :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(별표3)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⑪ 안전관리분야(가스)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울산 강원	❖ (자격증) 가스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자격증 기 술 사 가스 기 능 장 가스 기 사 가스 산업기사 가스 기 능 사 가스 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 -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자 -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"안전관리분야(가스)" 중 조사인력(보조 포함)으로 근무한 경력

⑫ 언론공보분야(콘텐츠제작)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인천	❖ (공공경력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*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,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※ 근무경력은 디지털콘텐츠(영상, 이미지) 제작 및 편집과 관련된 실무경력에 한함 ※ 임용예정계급 :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(별표3)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⑬ 외국어분야(영어) (소방교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세종	❖ (검정시험) **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** 1. 아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어느 하나 기준점수(등급) 이상 취득한 사람 TOEIC Speaking 7등급 이상 IELTS 8등급 이상 TOEFL Speaking section 27점 TEPS-Speaking 1등급 이상 ※ 위의 검정시험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다. 2.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 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 ○ 전문성 확인을 위해 면접시험의 일부를 영어로 진행(예정) 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⑭ 의무소방전역분야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세종 강원 충북 경남	❖ (공공경력) 의무소방원 만기 전역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인 사람 ※ 만기전역 예정자가 최종합격 후 만기전역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됨

⑮ 자동차정비분야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중앙
경기
강원
충남
전북
경북
제주

❖ (자격증) 자동차정비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(군 경력은 제외)

○ 자격증

기 술 사	차량
기 능 장	자동차 정비
기 사	
산업기사	
기 능 사	자동차정비, 자동차차체수리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(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)

◦ 소방차량(소방펌프차, 소방물탱크차, 소방화학차,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) 및 특장 소방차량의 제조 또는 정비업체
◦ 자동차 종합정비업(자동차 정기검사, 판금·도색관련 업무 제외) *법 개정전 1급 공업사

⑯ 자동차운전분야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광주
대전
경기
충북
전남
경북

❖ (자격증) 자동차운전 관련 자격증(제1종 대형운전면허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(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)

◦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
◦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
◦ 건설기계(지게차 제외)
  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, 도로보수트럭
  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 적재식)
  -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
◦ 특수자동차(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. 단, 대형견인차,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)
  ※ 1종 보통 또는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실무경력은 제외
  ※ 도로교통법 개정('18.4.25.)전 대형운전면허를 요건으로 한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실무경력은 인정함

⑰-1 전기분야 [소방사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대구
강원
충남
제주

❖ (자격증) 전기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자격증

기 술 사	건축전기설비, 발송배전, 전기응용
기 능 장	전기
기 사 산업기사	전기, 전기공사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

○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

○ 인정 실무경력
- 전기설비의 설계·공사·유지·운용·점검·감리
-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전기분야 조사인력(보조포함)으로 근무한 경력

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※ 충남의 경우 전기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 관련부서에 근무

⑰-2 전기분야 [소방사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중앙
울산
경기
전남

□ **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**

❖ (자격증) 전기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자격증

기 술 사	건축전기설비, 발송배전, 전기응용
기 능 장	전기
기 사 산업기사	전기, 전기공사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

○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

○ 인정 실무경력
- 전기설비의 설계·공사·유지·운용·점검·감리
-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전기분야 조사인력(보조포함)으로 근무한 경력

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❖ (학력) 전기과·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
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

※ 경기의 경우 전기분야 합격자 소방특별조사 관련 부서에 근무

⑰-3 전기・전자분야(소방교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서울	□ **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** ❖ (자격증) 전기・전자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자격증 기 술 사 : 건축전기설비, 발송배전, 전기응용, 산업계측제어, 전자응용 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 ○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○ 인정 실무경력 - 전기설비의 설계·공사·유지·운용·점검 - 전자 회로의 개발(응용), 전자기기의 설계·제작·조립·설치·검사·보수·관리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❖ (학력) 전기과・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 *※ 서울의 경우 전기·전자분야 합격자 화재조사 관련부서에 근무*

⑱-1 정보통신분야 [소방사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중앙
인천
강원
전북
제주
창원

❖ (자격증) 정보통신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자격증

기 술 사	정보관리, 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
기 능 장	통신설비
기 사	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처리, 정보보안, 방송통신, 무선설비, 전파전자통신, 정보통신, 빅데이터 분석
산업기사	사무자동화, 정보처리, 정보보안, 방송통신, 무선설비, 전파전자통신, 정보통신, 통신선로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

○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* 또는 민간업체

○ 인정 실무경력
- S/W개발부서 및 D/B설계·운영부서에서 S/W개발(연구·운영)·D/B설계(연구·운영)
- 시스템(서버, 네트워크, DB, 스토리지, 보안장비) 구축·설계·운영
- 통신, 방송, 무선, 정보설비 구축·설계·운영
- 정보보안 기획·관제·운영·분석 및 침해사고 대응

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⑱-2 정보통신분야[전산] [소방사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서울
경기

❖ (자격증) 정보통신(전산)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자격증

기 술 사	정보관리, 컴퓨터시스템응용
기 능 장	
기 사	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처리, 빅데이터 분석
산업기사	사무자동화, 정보처리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

○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* 또는 민간업체

○ 인정 실무경력
- S/W개발부서 및 D/B설계·운영부서에서 S/W개발(연구·운영)·D/B설계(연구·운영)
- 시스템(서버, 네트워크, DB, 스토리지, 보안장비) 구축·설계·운영

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⑱-3 정보통신분야[통신] [소방사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서울
대구
울산
경기
전남

❖ (자격증) 정보통신(방송, 무선, 통신)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자격증

기 술 사	정보통신
기 능 장	통신설비
기 사	방송통신, 무선설비, 전파전자통신, 정보통신
산업기사	방송통신, 무선설비, 전파전자통신, 정보통신, 통신선로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

○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* 또는 민간업체

○ 인정 실무경력
- 통신, 방송, 무선설비 구축·설계운영

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⑱-4 정보통신분야[정보보안] [소방사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서울
경기

❖ (자격증) 정보통신(정보보안)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자격증

기 술 사	정보관리, 컴퓨터시스템응용
기 사 산업기사	정보보안, 정보처리, 정보통신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

○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* 또는 민간업체

○ 인정실무경력
- 시스템 보안 관리, 정보보호시스템 구축.운영
- 네트워크 보안,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등 정보보안 관련 업무

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⑱-5 정보통신분야[빅데이터 분석] [소방사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강원
경남

❖ (자격증) 정보통신(빅데이터 분석)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자격증

기 술 사	정보관리, 컴퓨터시스템응용
기 사	빅데이터 분석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처리, 정보보안
산업기사	사무자동화, 정보처리, 정보보안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

○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* 또는 민간업체

○ 인정 실무경력 : 빅데이터 수집・분석・응용・융합 및 데이터 관리

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⑲-1 화학분야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전북	❖ (공공경력) 군 화학분야(연막, 제독제외)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, 화학부대*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,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*화학부대 : 국방부・육군・해군・공군・해병대 소속 화학지원대 또는 화학대대

⑲-2 화학분야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울산
경기
충남
전남

□ **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**

❖ (자격증) 화학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자격증

기 술 사	화공
기 능 장	위험물
기 사	정밀화학, 화공, 화약류제조, 화학분석, 바이오화학제품제조
산업기사	화약류제조, 바이오화학제품제조, 위험물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

○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

○ 인정 실무경력
- 화학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·설계
-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
-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

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❖ (학력) 화학과·응용화학과·화학공학과·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
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

※ 충남의 경우 화학분야 합격자 화재조사 관련 부서에 근무

⑲-3 화학분야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제주 창원

□ **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**

❖ (자격증) 화학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자격증

기 술 사	화공
기 능 장	위험물
기 사	정밀화학, 화공, 화약류제조, 화학분석, 바이오화학제품제조
산업기사	화약류제조, 바이오화학제품제조, 위험물

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

○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

○ 인정 실무경력
- 화학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·설계
-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
-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

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

❖ (공공경력) 군 화학분야(연막, 제독제외)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, 화학부대*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,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

*화학부대 : 국방부・육군・해군・공군・해병대 소속 화학지원대 또는 화학대대

⑲-4 화학분야 (소방사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중앙 인천 경남	□ **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** ❖ (자격증) 화학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자격증 기 술 사 : 화공 기 능 장 : 위험물 기 사 : 정밀화학, 화공, 화약류제조, 화학분석,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: 화약류제조, 바이오화학제품제조, 위험물 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 ○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○ 인정 실무경력 - 화학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·설계 -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 -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❖ (학력) 화학과·응용화학과·화학공학과·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 ❖ (공공경력) 군 화학분야(연막, 제독제외)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, 화학부대*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,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*화학부대 : 국방부・육군・해군・공군・해병대 소속 화학지원대 또는 화학대대

⑲-5 화학분야 (소방교) / 시험절차(필기, 체력, 면접)

중앙 대전	❖ (학력) 화학과, 응용화학과, 화학공학과,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

⑲-6 화학분야 (소방장) / 시험절차(필기, 면접)

광주 경기	❖ (학력) 화학과, 응용화학과, 화학공학과,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

⑲-7 화학분야 [소방장] / 시험절차[필기, 면접]

서울	□ **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** ❖ (자격증) 화학 관련 아래의 자격증(1개 이상)을 취득한 후,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자격증 기 술 사 | 화공 ○ 당해 분야 인정범위 ○ 근무대상(기관)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○ 인정 실무경력 - 화학공정 및 장비에 대한 연구·설계 - 화학분석에 대한 연구 -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❖ (학력) 화학과, 응용화학과, 화학공학과,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※ 유사학과 범위 : 해당 학교 총(학)장이 발행한 <동일계통학과 증명서>로 인정 *※ 서울의 경우 화학분야 합격자 화재조사 관련부서에 근무*

⑳ 회계분야 [소방교] / 시험절차[필기, 체력, 면접]

전북	❖ (공공경력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*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(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*을 해당 부문·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)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**이 1년 이상인 사람 * 소방기관에서 특수기술부문(회계)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** 근무(연구)경력은 회계관련 실무경력에 한함 ※ 임용예정계급 :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(별표3) *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